ADOPT-050-INFO K 캘리포니아주 아동 입양 방법

입양에 대한 일반 정보

시작하기에 앞서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귀하 가정의 선택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모든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입양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입양 페이지의 셀프 도움말 가이드를 참조하여 입양 양식 사본을 구하고, 입양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를 찾아보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selfhelp.courts.ca.gov/adoptions). 지역 법원 행정실에서도 입양 양식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에는 입양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정보 시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입양 단계를 안내합니다.

- 양부모 및 동거인
- 양부모 및 동거인 친자 관계 확인
- 독자적 입양
- 기관(미국 국내) 및 다음을 포함:
  - 기관 배치 또는 기관 결합
- 국가 간 입양

이러한 입양 유형의 정의나 자세한 정보는 selfhelp.courts.ca.gov/adoptions를 참조하십시오.

가정 평가 또는 조사를 담당할 부서나 기관은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입양 사례에서는 가정 평가나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 독자적 입양의 경우
  - 사회복지국(DSS) 지역 사무소.
  - 입양 기관.
  - 신생아의 독자적 입양인 경우, 입양 서비스 제공자(ASP)도 선택해야 합니다.
    ASP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면허를 발부하고 인증한 개인 또는 입양 기관입니다. ASP의 역할은 입양 절차에서 친부모에게 친부모의 권리를 설명하고(아동을 귀하에게 "배치"하기 전에), 서류와 동의서 서명 과정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 웹사이트에 ASP 면허를 발급받은 제공자 전원이 기재된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은 기관 기준으로 나열하거나 개인 기준으로 나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P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귀하는 입양 부모로서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가정 평가나 ASP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selfhelp.courts.ca.gov/independent-adoption/placed를 참조하십시오.
- 양부모 입양의 경우, 법원 조사관이나 사적으로 고용한, 면허가 있는 임상 사회복지사 또는 기타 적절한 면허를 취득한 인물이 귀하의 가정 평가 또는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selfhelp.courts.ca.gov/stepparent-adoption을 참조하십시오.

어느 사무국이나 기관이 귀하의 가정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입양 신청서 외에 필요한 추가 서류

대부분의 입양 절차를 진행할 때 입양 부모와 그 법적 대리인 또는 기관은 추가적인 서명된 양식이나 인증받은 서류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동의서 또는 친권 포기 각서
- 사망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기타 법원 명령
- 친자관계 포기 통지서 또는 거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에서 해방하는 청원서와 명령. (참고: 이것은 별도의 법정 행위입니다.)
-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의 친권을 해지하기 위한 청원서와 명령. (참고: 법원에 따라, 이 서류를 입양 사례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법원 행위로 진행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위의 각 항목은 부모 지위의 결정 내용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관 입양인 경우, 해당 기관이 위의 정보를 취득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입양 가정 평가 또는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위는 아동에 대한 해당 부모의 관계와 기타 여러 요인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부모 지위의 정의와 자세한 정보 및 이외에 필요한 협조 또는 서류 작업에 대해 알아보려면 selfhelp.courts.ca.gov/adoptions를 참조하십시오.

양부모/동거인 입양

배우자나 동거인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양부모 입양 자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 입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절차를 찾으십시오.

→ 아동의 출생 시점에 귀하가 해당 아동의 법적 부모와 결합 상태에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법적 부모와 결합 상태에 있습니까? (“결합 상태(union)”는 결혼,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등록된 동거 상태 또는 합법적으로 결혼과 동등한 다른 주의 등록된 동거나 동성 결혼을 말합니다.)

→ 귀하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이 아이를 출산했습니까, 아니면 둘 중 한 명 또는 둘 모두에 의해 진행된 임신 대리모 절차를 통해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 아래에서 양부모/동거인 입양에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두 질문 모두에 ‘예’라고 답한 경우, 아래에서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양부모 입양에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1) 법원 양식 작성

• ADOPT-203	양부모 입양 신청서	판사에게 귀하 본인과 입양하고자 하는 아동에 관해 알리는 서류입니다.
• ADOPT-210	입양 동의서	판사에게 귀하와 해당 아동(12세 이상인 경우)이 입양에 동의한다고 알리는 서류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되, 판사가 서명을 요청할 때까지 서명하지 마십시오.
• ADOPT-215	입양 명령서	입양이 승인되면 판사가 이 양식에 서명합니다.
• ICWA-010(A)	미국 원주민 아동 질의 첨부 양식	판사에게 귀하가 아동이 미국 원주민일 가능성을 질의한 사실이 있다고 알리는 서류입니다.
• ICWA-020	미국 원주민 신분 부모 통지	친부모 양쪽에 각각 양식이 한 부씩 필요합니다. 아동의 부모에게 미국 원주민 신분일 가능성에 관해 문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양부모 입양 추가 양식

• ADOPT-205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고서)	양부모 입양 시 친자 관계 확인 신고서	법원에 귀하가 자녀를 갖게 된 방법과 다른 부모의 유무를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 양식은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해 양부모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이런 유형의 입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친부모와 입양 부모 양측이 모두 별개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는-	
• ADOPT-206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신청서)	양부모 입양 시 친자 관계 확인 신고서: 임신 대리모	법원에 귀하가 자녀를 갖게 된 방법과 다른 부모의 유무를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 양식은 임신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었고,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생했으며, 아동이 태어난 주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아동의 출생 증명서에 법적 부모로 등재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해 양부모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

2 양식을 법원에 제출
작성한 양식을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법원에서 제출 수수료 $20를 부과합니다(보건 및 안전 규정 섹션 103730에 따름). 또는 변호사나 입양 기관(이용 중인 경우)에 양식을 가져갑니다. 심리가 없는 경우, 법원 서기나 공증인 입회하에 ADOPT-210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참고**:**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양부모 입양의 경우**,**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명령하지 않으면 조사나 심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제출할 때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 입회하에 ADOPT-210 양식에 서명하면 판사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서류가 완전하고 귀하가 요건에 부합하면 판사가 입양 명령서(ADOPT-215 양식)에 서명하고, 그러면 입양 절차가 완료됩니다. 귀하와 변호사에게 사본이 발송됩니다.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3 조사 완료
대부분의 양부모 입양에서는 최종 심리에 앞서 조사나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귀하가 신청서에 기재한 인물이나 법원에서 명령을 받은 인물이 완료합니다. 조사를 시작하려면 귀하가 입양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조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가정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심리 날짜에 법원에 출석
필수 사항:
- 입양할 아동 동반
- ADOPT-210 양식 지참
- ADOPT-215 양식 지참
- 귀하와 자녀, 판사가 함께 사진을 찍고자 하는 경우 카메라 지참(선택 사항)
- 친구/친척 동반(선택 사항)
-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 VS-44 양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elfhelp.courts.ca.gov/stepparent-adoption/prepare-lodge-forms 참조).

미국 내에서의 독자적 입양 또는 기관 입양

미국 국내에서 진행하는 독립 입양 또는 기관 입양인 경우, 아래 1~4항을 작성하십시오.
참고: 기존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입양과 함께 소멸됩니다. 독자적 입양의 경우, 기존 부모와 입양 부모가 동의하면 기존 부모의 권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법 섹션 8617(b)를 참조하십시오.

1 법원 양식 작성

• ADOPT-200	입양 신청서	판사에게 귀하 본인과 입양하고자 하는 아동에 관해 알리는 서류입니다.
• ADOPT-210	입양 동의서	판사에게 귀하와 해당 아동(12세 이상인 경우)이 입양에 동의한다고 알리는 서류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되, 판사가 서명을 요청할 때까지 서명하지 마십시오.
• ADOPT-215	입양 명령서	입양이 승인되면 판사가 이 양식에 서명합니다.
• ADOPT-230	입양 경비	판사에게 귀하가 입양할 자녀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 돈을 지출했는지 알리는 서류입니다.
• ICWA-010(A)*	미국 원주민 아동 질의 첨부 양식	판사에게 귀하가 아동의 미국 원주민인지 판단하기 위한 필수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서류입니다.
• ICWA-020*	미국 원주민 신분 부모 통지	친부모 양쪽에 각각 양식이 한 부씩 필요합니다. 아동의 부모에게 미국 원주민 신분일 가능성에 관해 문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기관 또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양식을 작성하여 입양 파일에 포함해야 합니다(복지 및 사회보장법 규정을 따름). 이외에 ICWA와 관련한 법원 명령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양식을 법원에 제출
작성한 양식을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법원에서 제출 수수료 $20.00를 부과합니다(보건 및 안전 규정 섹션 103730을 따름). 또는 변호사나 입양 기관(이용 중인 경우)에 양식을 가져갑니다.

3 사회복지사가 보고서 작성
대부분의 입양 절차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입양 부모와 아동에 관해 판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귀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귀하가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 수수료를 납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에게 사본을 보내줍니다. 보고서를 받으면 법원 서기에게 입양 심리 날짜를 문의하십시오.

4 심리 날짜에 법원에 출석
필수 사항:

- 입양할 아동 동반
- ADOPT-210 양식 지참
- ADOPT-215 양식 지참
- ADOPT-230 양식 지참
- 귀하와 자녀, 판사가 함께 사진을 찍고자 하는 경우 카메라 지참(선택 사항)
- 친구/친척 동반(선택 사항)

국가 간 입양

국가 간(해외) 입양인 경우, 아래 1~6항을 작성하십시오.
참고: 외국에서 이전에 입양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외국에서 아동의 입양이 확정된 경우, 아동이 미국에 입국한 후 60일 이내 또는 아동의 16세 생일 이전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입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원 양식 작성

• ADOPT-200	입양 신청서	판사에게 귀하 본인과 입양하고자 하는 아동에 관해 알리는 서류입니다.
• ADOPT-210	입양 동의서	판사에게 귀하와 해당 아동(12세 이상인 경우)이 입양에 동의한다고 알리는 서류입니다. 양식을 작성하되, 판사가 서명을 요청할 때까지 서명하지 마십시오.
• ADOPT-215	입양 명령서	입양이 승인되면 판사가 이 양식에 서명합니다.
• ADOPT-230	입양 경비	판사에게 귀하가 입양할 자녀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 돈을 지출했는지 알리는 서류입니다.
• ICWA-010(A)	미국 원주민 아동 질의 첨부 양식	판사에게 귀하가 아동이 미국 원주민일 가능성을 질의한 사실이 있다고 알리는 서류입니다.
• ICWA-020	미국 원주민 신분 부모 통지	친부모 양쪽에 각각 양식이 한 부씩 필요합니다. 아동의 부모에게 미국 원주민 신분일 가능성에 관해 문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2 입양 후 또는 위탁받은 후 방문 및 보고
외국에서 자녀의 입양을 확정한 경우, 입양 후 국제 입양 기관에서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합니다. 이 방문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아래 설명 참조). 아동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가정에 입양을 위해 위탁된 경우, 입양 기관은 최대 4회 방문하여 사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도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서류 첨부
외국에서 아동의 입양을 확정한 경우, 입양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입양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법령, 명령 또는 입양 증명서의 인증되었거나 기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본
- 아동의 해외 출생 증명서 사본(인증을 받았거나 기타 형태의 공식 서류)
-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각종 필수 서류의 인증된 번역본
- 아동이 입양 부모의 직계 친인척 자격으로 미국에 합법적 입국을 허가받았다는 증거
- 캘리포니아주에서 국가 간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된 국가 간 입양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계약자가 위탁 후 한 번 이상의 가정 방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
- 가족법 섹션 8900에 따라 국가 간 입양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은 입양 기관이 해외 입양을 확정하기 위해 이전에 완료한 가정 조사서 사본

4 양식을 법원에 제출
작성한 양식과 필요한 서류를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법원에서 제출 수수료 $20.00를 부과합니다(보건 및 안전 규정 섹션 103730을 따름). 또는 변호사나 입양 기관(이용 중인 경우)에 양식을 가져갑니다.

5 양식과 서류 사본 제출
외국에서 아동의 입양을 확정한 경우, 국가 간 입양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입양 기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양식과 서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6 심리 날짜에 법원에 출석
필수 사항:
- 입양할 아동 동반
- ADOPT-210 양식 지참
- ADOPT-215 양식 지참
- ADOPT-230 양식 지참
- 귀하와 자녀, 판사가 함께 사진을 찍고자 하는 경우 카메라 지참(선택 사항)
- 친구/친척 동반(선택 사항)

미국 원주민 아동 복지법**(ICWA)**에 따른 질의 및 통지

☐ 아동과 아동의 생활과 관련 있는 다른 인물(부모 및 가족 구성원, 아래 정의 참조)에게 아동이 미국 원주민인지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미국 원주민 아동 질의 첨부 서류(ICWA-010(A) 양식)를 입양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관 입양의 경우,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이 질의를 실시하고 입양 파일에 양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독자적 입양의 경우, 입양 서비스 제공자, CDSS 지역 사무소 또는 위임받은 카운티 입양 기관이 이 절차를 담당합니다. 질의 의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CWA-005-INFO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 가족 구성원은 미국 원주민 아동의 부족 법률 또는 관행에 따라 정의되며, 법률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만 18세 이상이고 해당 미국 원주민 아동의 조부모, 삼촌/이모/고모, 형제나 자매, 인척, 조카, 사촌 또는 육촌이나 양부모여야 합니다. (25 U.S.C. § 1903(2)(2).)

☐ 친부모 각각을 대상으로 미국 원주민 신분 부모 통지(ICWA-020 양식)를 작성한 후 입양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거나, 양측 친부모, 미국 원주민 관리인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지를 시도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 입양의 경우,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친부모에게 이 양식을 제공하고 입양 파일에 포함해야 합니다. 독자적 입양의 경우, 입양 서비스 제공자, CDSS 지역 사무소 또는 위임받은 카운티 입양 기관이 이 절차를 담당합니다.

☐ 아동이 미국 원주민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추가 질의를 거쳐야 합니다. 질의 의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CWA-005-INFO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 절차를 거치는 중간에 언제라도 아동이 미국 원주민임을 인지할 근거가 생기는 경우, 아동의 부족, 부모, 미국 원주민 후견인 및 미국 원주민 사무국(Bureau of Indian Affairs)에 입양 요청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원주민 아동을 위한 아동 보호 진행 통지서(ICWA-030 양식)를 사용합니다. 이 양식은 등기 우편 또는 내용 증명 우편(certified mail)으로 송달해야 하고, 반송 수령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아동이 미국 원주민임을 인지할 근거란 (1)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관심이 있는 인물이 법원에 아동이 미국 원주민임을 알리거나 (2) 아동 본인, 아동의 부모 또는 미국 원주민 관리인이 알래스카 원주민 보호 구역이나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3) 어떠한 인물, 부족이나 단체에서 법원에 아동이 미국 원주민임을 시사하는 정보를 발견했다고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 5.481(b)(3)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아동이 미국 원주민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 사건이 부족 관행 입양인 경우, 아래 미국 원주민 아동 입양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원주민 아동 입양

미국 원주민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 원주민 아동 입양서(ADOPT-220 양식)

☐ 친권 소멸에 대한 미국 원주민 아동의 부모의 동의서(ADOPT-225 양식)

부족 관행에 따른 입양인 경우, 신청서(ADOPT-200 양식)와 명령서(ADOPT-215 양식)에 부족 관행 입양 명령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미국 원주민 아동이고 만 18세가 되었으며 입양 대상으로 위탁된 경우, 최종 명령 또는 칙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해도 됩니다. 해당 법원에서 당사자 아동에게 어느 부족 소속인지(있는 경우), 친부모는 누구인지 알리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부족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25 U.S.C. § 1917]

"공개" 입양 및 입양 후 접촉 동의서 사용(가족법 섹션 **8616.5**)

입양 후 아동이 혈연관계인 친척과 연락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양 후 접촉 동의서(ADOPT-310 양식)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양식에 입양이 확정된 이후 아동과 혈연관계인 친척 간의 연락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확정 심리 또는 법원 명령 전에 이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의 성인 당사자 전원과 아동을 입양 대상으로 위탁하거나 입양에 동의한 면허 있는 기관, 그리고 당사자 아동(12세 이상인 경우)에게 이 동의서의 신청 표시된 사본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 이것은 자발적인 동의이며 입양 확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기로 하는 경우, 이 양식은 입양 파일의 일부로 포함되며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 또는 부모, 아동 및 아동과 혈연관계인 친척은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연락을 지속하기로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입양 후 접촉 동의서(ADOPT-310 양식)에 첨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인 친척이란 친부모, 형제자매 및 기타 혈연관계로 맺어진 친척을 말합니다. 미국 원주민 아동의 경우, 여기에 아동의 미국 원주민 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인쇄 저장 지우기